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감염병 등 장기적인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무선국 검사 시기를 연장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5G망 조기구축 및 이동통신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무선국 설치환경 변화와 장비 성능 개선에 따른 검사업무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 검사수수료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검사원가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이동통신 무선국 공용·환경친화 정비 이행율과 전파사용료 감면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보행로 등이 없어 일반인 접근이 제한되는 자동차전용도로, 도로터널 등에 설치된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측정·관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기자재나 타법에 의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의 경우에 적합성평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선국 정기검사 연기 규정 신설(안 제45조제1항 개정)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재난 및 안전 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무선국 검사가 어려운 경우 정기검사 시기를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

나. 무선국 변경 시 전자파 강도 측정범위 명확화(안 제66조제1항제1호 개정)

무선국 준공이후 안테나공급전력, 이득, 구성 등의 변경 발생으로 전자파 강도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전자파 강도 측정에서 제외토록 명시

다. 검사수수료 재검토 규정 신설(안 제123조의2제2항제1의2호 신설)

합리적인 무선국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이동통신 무선국 설치환경 변화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원가에 기반한 검사수수료를 5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재검토 규정을 신설

라.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 범위 합리화(안 [별표 6])

무선국 설치장소에 일반인 접근이 제한되거나 출력 분산으로 개별 안테나 전자파 강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전자파 강도 측정·관리 대상에서 제외

마. 적합성평가 면제 범위 확대(안 [별표6의2])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기자재는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판매하더라도 적합성평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효과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등에 따라 특례가 부여된 기자재를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에 추가

바. 전파사용료 산정기준 개편(안 [별표8])

전파법 제48조의 2(자연환경 보호 등)에 따른 공용·환경친화 정비 이행
실적이 전파사용료 감면제도와 연계·부과될 수 있도록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

사. 이동통신 검사수수료 개편(안 [별표 13])

이동통신 서비스 전환 추세 및 무선국 설치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원가를 기반으로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수수료 개편

대통령령 제 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지역에서 정상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의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66조제1항제1호 본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다만 해당 변경으로 전자파 강도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23조의2제2항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6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2022년 1월 1일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 제1호자목 중 “기자재”를 “기자재.”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목에 따라 반입한 기자재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

우 판매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합성 평가를 면제함.

별표 6의2 제1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등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법 제58조의 2제2항·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별표 8의 1. “공용화감면계수 + 환경친화감면계수”를 “(공용화감면계수 + 환경친화감면계수) × 환경친화정비 이행률”로 하며,

별표 8의 4. “공용화·환경친화 및 로밍 감면계수 산정기준”을 “공용화·환경친화·로밍 감면계수 및 정비 이행률 산정기준”으로 하며, [표]“공용화율, 환경친화율, 로밍율(%)”를 “가. 공용화율, 환경친화율, 로밍율(%)”로 하며, [표]“공용화 감면계수”를 “1) 공용화 감면계수”로 하며, [표]“환경친화 감면계수”를 “2) 환경친화 감면계수”로 하며, [표]“로밍 감면계수”를 “3) 로밍 감면계수”로 하며,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공용·환경친화 정비 이행률	정비완료 무선국/정비대상 무선국
-------------------	-------------------

별표 8의 4. 비고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용·환경친화 정비 이행율: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년도 전체 정비대상 무선국 중 정비가 완료된 무선국의 비율을 말한다.

별표 13의 1.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준공검사 수수료란 중 “12만원”을 “10만원”으로 “14만원”을 “11만6천원”으로 하며, 정기검사 수수료란 중 “10만원”을 “8만3천원”으로 “10만3천원”을 “8만5천원”으로 하며, 수시검사 수수료란 중 “10만원”을 “8만3천원”으로 “10만3천원”을 “8만5천원”으로 하며, 변경검사 수수료란 중 “10만원”을 “8만3천원”으로 “10만3천원”을 “8만5천원”으로 하며, 비고란 중 “3만오천원”을 “2만원”으로 한다.

[별표 6]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제65조 관련)

무선국 구분	안테나공급전력 기준	설치장소 기준
1. 이동통신의 기지국 · 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3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송신장치와 안테나가 모두 옥내에 설치되고 안테나공급전력이 다수 안테나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안테나공급전력을 기준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500와트 이하이고 안테나설치대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통합공공망용 기지국 · 이동중계국 · 육상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3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3. 무선호출 · 주파수공용통신 · 무선데이터통신의 기지국 · 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4. 방송국 · 방송보조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5. 무선향행육상국 · 무선탐지육상국(해당 무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선국의 실험국을 포함한다)	력의 합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안테나 주엽빔의 상향각이 0도 이하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비고: 1. 「군용전기통신법」 등에 따른 군용전기통신설비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2. 보행로가 없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도로터널, 교량, 지하차도 등에 설치되어 일반인의 도보 통행이 제한된 장소에 설치된 무선국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검사의 시기·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 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르며, 이 시기에 정기검 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 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5조(검사의 시기·방법 등) ① ----- ----- ----- -----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사고 가 발생하여 해당 지역에서 정 상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검 사 시기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의 범위에서 정기검사의 시기를 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①법 제47조의2제3항 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 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 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①----- ----- ----- --. ----- ----- ----- -----

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제31조제4항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와 제39조의2제3항제1호(안테나공급전력 및 안테나의 형식·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제2호 및 제4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다만,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송신장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안테나에 부착된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500와트를 초과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6의2]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제77조의7제1항 관련)

1.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

1. -----

----- 해당한다. 다만 해당
변경으로 전자파 강도가 낮아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별표 6의2]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제77조의7제1항 관련)

1.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아. (생 략)	(생 략)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	
차.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신 설>		

2.~4. (생 략)

[별표 8]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1항 관련)

1. 사업자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사업자별 전파사용료 = (가입자수 × 단가) × 감면계수 [1 - (공용화감면계수 + 환경친화감면계수 + 로밍감면계수 + 이용효율감면계수)] × 전파특성계수

2.~ 3. (생략)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u>다만, 자목에 따라 반입한 기자재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판매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함.</u>	1대	
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등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기자재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카.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2.~4. (현행과 같음)

[별표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업자별 전파사용료 = (가입자수 × 단가) × 감면계수 [1 - {(공용화감면계수 + 환경친화감면계수) × 공용·환경친화정비 이행율} + 로밍감면계수 + 이용효율감면계수] × 전파특성계수

2.~ 3. (현행과 같음)

4. 공용화·환경친화 및 로밍 감면
계수 산정기준

[표] 공용화율, 환경친화율, 로밍률(%)

[표] 공용화 감면계수

[표] 환경친화 감면계수

[표] 로밍 감면계수

[표] (신설)

비고 1.~3. (생략)

4. (신설)

5.~6. (생략)

[별표 13]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제96조제1항관련)

무선국의 종별	안테나공급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준공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수시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1. 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	100W 미만	12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0W 이상	14만원	10만3천원	10만3천원	10만3천원

비고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무
선국 중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
선국에 대해서는 제96조 및 제97

4. 공용화·환경친화·로밍 감면 계수
및 정비 이행을 산정기준

[표] 가. 공용화율, 환경친화율, 로밍율(%)

[표] 1) 공용화 감면계수

[표] 2) 환경친화 감면계수

[표] 3) 로밍 감면계수

[표]

나. 공용·환경친화 정비 이행을	정비완료 무선국/정비대상 무 선국
----------------------	-----------------------

비고 1.~3. (현행과 같음)

4. 공용·환경친화 정비 이행을: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년도 전체 정비대상 무선국 중
정비가 완료된 무선국의 비율을
말한다.

5.~6. (현행과 같음)

[별표 13]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제96조제1항관련)

무선국의 종별	안테나공급 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준공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수시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1. 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	100W 미만	10만원	8만3천원	8만3천원	8만3천원
	100W 이상	11만6천원	8만5천원	8만5천원	8만5천원

비고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무선국별로 <u>3만5천원</u>의 준공검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무선국이 법 제24조 제7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하여 산정된 검사수수료에서 <u>3만5천원</u>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 ----- <u>2만원</u>----- ----- ----- ----- ----- ----- ----- <u>2만원</u>----- ----- -----
부칙 <u><신 설></u>	<u>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